

#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
- 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수익발생시설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함

## 2. 주요내용

- 가. 임시시장 개설 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안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나. ‘시장활성화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 다.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통시장의 정의가 변경(안 제3조, 제6조 ~ 제10조)
- 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 삭제(안 제26조, 제33조)
- 마. 수익금 사용 및 정산 규정 신설(안 제38조, 제39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 3. 조 례 안 : 불 임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민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불임)

##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상인”이라 함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을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점포”라 함은”을 ““점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을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등록”을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시장·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편의시설”이라 함은”을 ““편의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을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시장관리자"라 함은"을 "'시장관리자"란"으로, "호중"을 "호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을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을 "시장의 인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이상"을 "이상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을 "시장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중”을 “건축중”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취소)”를 “(시장의 인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시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미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로 한다.

제15조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을 “개설하는 자(구미시장”으로,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1조 내지 제17조”를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제25조 내지 제29조”를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고,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미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1년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종전의 제39조)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등록시장, 인정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li> <li><u>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u></li> <li><u>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u></li> <li><u>4.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u></li> <li><u>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u></li> </ol> |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6.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  
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  
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8.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  
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  
여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  
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  
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  
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  
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  
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

제2조(정의) -----  
----- 뜻은 -----.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  
화구역 -----  
-----  
-----  
-----.  
-----  
-----  
-----  
-----

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육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미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미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  
-----  
-----.

2. “점포”란 -----  
-----  
-----  
-----  
-----  
-----  
-----.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 신고-----  
-----.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  
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  
미터 이내에 50개이상의 점포  
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  
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  
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  
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  
· 소방· 가스· 상하수도 및  
냉· 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  
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  
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미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

5. -----  
-----  
--이란 -----  
-----  
----- 시  
장·상권활성화구역 -----  
-----  
-----.

6. “편의시설”이란 -----  
-----  
-----  
-----  
-----  
-----  
-----  
--.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  
-----

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중 구미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미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 (생략)

-----.

8. “시장관리자”란 -----  
-----  
-----  
- 호 중 -----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  
-----  
-----  
-----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  
-----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2장 시장의 인정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  
-----  
-----  
----- 이  
상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

1.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3.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시장  
장 -----  
-----  
-----  
-----  
-----  
----- 시장  
-----.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  
-----  
-----.

1. -----  
- 가목부터 마목까지 -----  
-----  
-----

2.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
4. 5. (생 략)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미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미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  
-----  
-----.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 중-----
4. 5.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  
-----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시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미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  
-----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

할 때에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미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은 제외한다)는 구미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미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  
-----  
----- 신  
고-----.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  
-----  
-----  
----- 개설하는 자(구미시장-  
-----  
-- 신고하여야 ----.

<삭 제>

30일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  
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  
미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  
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  
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미시장은 그 내용을 시  
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삭 제>

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략)

② 상인회는 구미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생략)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미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 설>

제38조 (생 략)

<신 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미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

제38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시설관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미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현행 제38조와 같음)

제39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1년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

|                                                                               |                                                     |
|-------------------------------------------------------------------------------|-----------------------------------------------------|
| 대화사업으로 <u>설치하고자</u> 하는<br>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br>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br>되도록 하여야 한다. | ----- <u>설치하는</u> -----<br>-----<br>-----<br>-----. |
| <u>제40조</u> (생   략)                                                           | <u>제42조</u> (현행 제40조와 같음)                           |

# 관계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 3의2. 생략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5. ~ 13. 생략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 생략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생략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략

제65조(상인회) ① ~ ⑧ 생략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생략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 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

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관 실 · 과    |       | 과학경제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남 동 수               |
|             | 담 당   | 이 운 균               |
|             | 담 당 자 | 김 준 필<br>(480-6184) |